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
번 호

51

제출년월일 : 1998. 11. .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☐ 제안이유

-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입하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이 시중은행금리 보다는 유리하나, 정부자금보다 금리가 높아 이용을 기피하고 있으며,
- 재정형편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이자상환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지역 개발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함.

☐ 주요골자

-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이율을 아래와 같이 인하함(안 제10조)
 - 상·하수도 및 댐주변사업 : 연리 7% ⇒ 6.5%
 - 여타사업 : 연리 8% ⇒ 7.5%
- 기타 조직개편에 따른 자구수정

☐ 근거법령

-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
- 지방공기업법 제5조

☐ 참고자료

1. 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대비표 1부.
3. 관련법규발췌 1부.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제2항중 "기획관리실장"을 "기획조정실장"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중 제1호의 "연리 7%"를 "연리 6.5%"로 하고, 단서조항을 삭제하며, 제2호의 "연리 8%"를 "연리 7.5%"로 한다.

제13조제1항중 "내무부장관"을 "행정자치부장관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역된 용자금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.